

카르펜테리아 밸리 수구 규칙 및 규정 수도세 미지급, 대체 지급 및 청구 분쟁

규칙 13d. 청구서 미결제:

- (1) 수구는 서비스 지역 내에서 제시된 청구서의 금액을 미지급 했거나 지불을 거부하는 고객에게 물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수구는 청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유형 1 상업 서비스 A, B 및 C, 민간 소방 서비스, 임시 미터 및 관개 고객과 유형 2 농업 용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단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 통지를 보낸다고 해서 15 일 이내에 미지불된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는 수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 13 (j) 참조).

수구는 유형 1 상업 서비스 A, B 및 C, 민간 소방 서비스, 임시 계량기 및 관개 고객 혹은 유형 2 농업 용수 고객들에게 이전 곳의 서비스 이용 청구서의 금액을 30일 이내에 미지급 했거나 지불을 거부할 경우, 새로운 서비스 신청서에 제공된 이전된 곳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수구는 지불이 연체 된 고객에게 전화, 편지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2) **체납 거주 계좌:** 체납 거주 계좌는 청구일 후 60 일째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및 지불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대체 지불을 설정하지 않은) 유형 1 주거 서비스 A 및 B 계정으로 식별됩니다. 60 일이 지난 후에도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정은 수도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다음 규칙은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4, Part 12, Chapter 6 [116900-116926] 법에 따라 연체 계정에 적용됩니다.

- (i) **연체료:** 청구일로부터 35 일째에 영업 종료시 청구서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청구서에 납부 기한 날짜는 눈에 띄게 표시됩니다. 수구는 청구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2일 전에 임박한 연체료를 고객에게 전화로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수구는 고객이 최근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연락처 정보를 알리는 것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ii) **연체료 면제:** 고객의 요청과 수구 부장의 재량에 따라, 경감 사유의 따라 그리고 고객이 지난 24개월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구역은 연체료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iii) **대체 지불 약정:** 일반 지불 기간 내에 수도 서비스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고객은 연체료 또는 서비스 종단을 피하기 위해 대체 지불 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구는 요청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지불 준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체 지불 약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미결제 잔액을 주 단위 또는 격주로 지불합니다;
 - (b) 미결제 잔액의 12 개월 상각.

대체 지불 준비를 원하는 고객은 수구에 연락하여 주간 또는 격주 상환 일정 또는 12개월 상각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서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객 이름, 주소 및 계정 번호
- 요청된 지불 대안
- 서명 및 날짜

수구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상환 금액과 지불 시작 날짜가 있는 원본의 복사본을 고객에게 다시 발행합니다.

(iv) **의료상 필요 및 재정적 어려움:** 고객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정에 대한 수도 서비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a) 해당 고객은 위의 (iii)에서 대체 지불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b) 1 차 진료자 (일반의, 전문의,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가정의, 의사, 1 차 진료 클리닉, 병원 또는 외래 환자 클리닉)는 서비스 종료가 물 공급이 제공되는 고객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을 인증합니다; 또한

(c) 기록의 고객은 가계 소득이 재무 문서 또는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general assistance), Medi-Cal, 보조 보안 소득 / 주 보조금 프로그램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또는 가족 구성원중의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에 참여하여 연방 빈곤 수준의 200 % 미만임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v) **서비스 종료:** 계정이 대체 상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위의 (iv) 섹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구는 청구 날짜 60 일 후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서비스 종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청구일로부터 32 일쯤 이후에 : 연체료 부과에 대한 전화 통지;

(b.) 청구일로부터 45 일 또는 그 이후에 : 연체료 및 고객에게 발행 된 서비스 종료 통지서. 이 서한은 아래 정보를 포함합니다:

- i. 고객 이름, 주소 및 계정 번호
- ii. 연체 금액
- iii. 서비스 종료를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협정 날짜
- iv. 대체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
- v.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vi. 수구 전화 번호 및 수구 규칙 웹사이트.

(c.) 청구 날짜 후 52 일 또는 그 이후에: 서비스 종료 날짜가 적힌 문 태그가 걸림;

(d.) 청구일로부터 61 일 또는 그 이후에: 수도 서비스의 해지와 폐쇄 및 재연결 비용 부과 (재 연결 비용에 대해서는 부록 c 참조).

(vi) **거주자 / 입주자에 대한 통지**: 수구는 수도 서비스 계정이 체납되어 있으며 서비스가 종료될 것을 해지하기 최소 7일 전에 입주자 또는 건물 매니저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으로 알릴 것입니다. 세입자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고자 할 경우 연체 계정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수구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통지서에 알릴 것입니다. 수구는 새로운 고객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재량에 따라 서비스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책임을 전제로 한 세입자에게는 과거의 기한이 청구되지 않지만 서비스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vii) **재연결 요금:** 청구서 미 지불에 대해 수구가 고객에게 물 서비스를 중단 했을 경우, 고객은 규칙 및 규정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연결에 대한관리 비용 수수료를 지불하며 모든 요금과 연체료를 납부할 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 미만임을 입증하는고객의 재 연결 비용은 업무 시간 내에는 \$ 50.00, 저녁과 주말 내에는 \$ 15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수구 재연결 비용은 부록 C를 참조 하십시오.)

(viii) **대체 지불 약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합의 된 지불 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섹션 iii), 첫 번째 누락된 지불 날짜부터 연체 계좌로 측정이 되며 통지 5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ix) **연락처 정보:** 수도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체 지불 방법을 원하는 고객은 (805) 684-2816 ext. 105내선으로 청구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x) **분쟁 청구 및 금전적 벌금:** 고객은 수구 규칙 및 규정 15조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기타 벌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구는 법안에 대한 항소 또는 이의 제기 중에는 서비스 종료 절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xi) **해지 된 서비스에 대한 통지:** 수구는 웹 사이트 www.cvwd.net/terminated_service에서 해지 된 서비스 연결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연도 이사회 첫 회의에서 서면 및 구두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합니다.

(xii) **수구 내 기타 미지급 청구서:** 수구는 고객들에게 이전 곳의 서비스 이용 청구서의 금액을 90일 이내에 미지급 했거나 지불을 거부할 경우, 새로운

서비스 신청서에 제공된 이전된 곳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정들은 위에 제시된 규칙 13 d (2) 에 요약된 다른 모든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5. 분쟁과 벌금형

a) 고객이 청구서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누수나 기타 유사한 문제로 인해 지불 감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1) 고객은 규칙 번호 13 (d)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해당 기간 동안 물의 평균 수량 (및 관련 계량기 요금)을 기준으로 수구가 결정한 금액을 예치해야하며, 고객이 청구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수 또는 기타 유사한 문제가 있거나 정상적인 사용량을 초과 및 오류가 있다고 믿는 이유 등을 서면 진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구는 상기 예치금과 서면 진술서를 받은 후, 차기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청구서를 검토 할 것이라고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차기 이사회는 수구가 해당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 후 7 일이 지나야합니다.

(3) 상기 이사회 회의에서 고객은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해 참석할 수 있고 청구서의 오류와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회의가 끝난 후 10 일 이전에 이사회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청구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고객이 수구에 오류를 통지하거나 청구된 금액 감소 요청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객의 청구서 또는 청구서에 대한 오류 또는 면제 요청을 포기해야 하며 청구서에 제시된대로 정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 규칙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측 계량기에서 발생하는 누수 또는 기타 유사한 문제로 인한 청구서 축소 요청은 이사회 검토 후 및 이사회 내에서 이사회회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됩니다:

i) 수구에서 결정한 해당 월의 4년 평균 물 계량을 초과하여 계량된 수량에 대해 25%의 크레딧이 수자원 감사가 완료된 후 고객의 계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i) 청구서 총액의 지불시 25% 크레딧을 제외해 3개월의 지급 가능 기간이 허용됩니다.

(5) 건물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관리자는 이사회에 축소 요청을 전달하지 않고 물 절약 설문 조사가 완료된 후 \$ 150 미만으로 계산된 경우 고객 계정에 25%의 크레딧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b) 기록된 고객이 금전적 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1) 고객은 모든 금전적 처벌 및 수도서비스료를 지불하고 계좌를 양호한 재정 상태로 유지해야합니다;

(2) 고객은 분쟁을 자세히 설명하고 금전적 벌금이 면제되어야 되는 이유를 서면 문서를 통해 수구에 제출해야합니다;

(3) 수구 총장 혹은 부장은 금전적 벌금과 관련된 상황을 검토하고 면제가 부여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수구 총장 또는 부장이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